

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. 6. 2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폐지되어 개정된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옥외광고물의 16종에 대한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와 신고절차 등 규정 (안 제1조 ~ 제3조)
-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규정 (안 제4조)
- 옥외광고물의 16종에 대한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제19조)
- 구미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~ 제21조)
-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과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22조 ~ 제27조)
-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 (제31조 ~ 제33조)
- 수수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(안 제34조~제36조)

4. 참고사항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
-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-3015(2005. 7.18)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. 6. 2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폐지되어 개정된 법령과 표준조례안에 부합되게 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.
-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적용하던 일부내용이 없어지므로써 본조례에 그 내용일부를 신설 및 수정 삽입하고 조례조항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「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등」 조례 본칙 「제1조~제15조」를 「제1조~제36조」로 개정하는 내용임.